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무역가격조작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ive Countermeasures Regarding Money
Laundering by Manipulation of Foreign Trade Price
-Focusing o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指導教授 辛 瀚 源

2014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際關稅學科

李 洪 煥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자금세탁 및 무역가격조작 정의 및 이론적 배경	5
제1절 자금세탁의 정의 및 수법	5
제2절 무역가격조작의 정의	18
제 3 장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의 사례 분석	21
제1절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범죄 사례	21
제2절 수입신용장 조작을 통한 범죄 사례	22
제3절 범죄사례 분석과 대응 한계	25
제 4 장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의 대응 방안	29
제1절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개관과 관세행정상의 특성	28
제2절 주요국가의 특별사법경찰제도	46
제3절 대한민국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 방안	65
제 5 장 결 론	70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70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72
참고문헌	73

표 목차

<표 4-1> 수출입 관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의 전개	42
<표 4-2>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세관공무원의 수사권한	44
<표 4-3> 형사소송법상 조사와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의 차이점	45



그림 목차

<그림 2-1> 미국 관세청 자금세탁 3단계 모델 9



Abstract

A Study on Effective Countermeasures Regarding Money Laundering by Manipulation of Foreign Trade Price -Focusing o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LEE, Hong Hw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The amount of annual money laundering in the world is 1 trillion Usd and trillions of Korean Won is being laundered each year. Although money laundering through foreign trade is rampant in our society, the awareness of money laundering by manipulation of foreign trade price is very low in the society.

In Korea, liberalization of foreign currency will be implemented in phases. The decrease of tariff rate due to FTA may be abused for flight of capital and creating tax evasion, fraud, and secret fund,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 new kind of crime.

The overall goal and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and regulation on money laundering by manipulation of foreign trade price as well as other kinds of crimes related to foreign trade that are expected in the future.

This paper is comprised of five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to the overall study, and the background and objective, range of study and the methods are explained.

Chapter 2 explains the definition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money laundering and foreign trade manipulation, which may be unfamiliar to people. Based on this, declaration of foreign trade price and related laws are explained in this chapter.

In Chapter 3, cases on money laundering by foreign trade price manipulation were intensively analyzed. Manipulation of foreign trade price and crimes of manipulation of import credit which are the typical cases of trade price manipulation were analyzed, and regulatory laws related to these cases were explained. These cases of trade price manipulation were analyzed based on working-level and data, and the limitations of the countermeasures of customs administrations were also explained.

In Chapter 4, 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by foreign trade price manipulation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cases mentioned in the previous chapters. First, customs inspection work in Korea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ere explained, and were compared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investigation task flow of other countries. Change of directions i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roles of customs service were suggested with specific solution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by foreign trade price manipulation more effectively.

Lastly, in Chapter 5,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overall opin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conducted and explained in the previous chapters. Also,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on future studies were also included.

Money laundering by foreign trade price manipulation derives many other trading frauds and it can also be abused for leaking national wealth. To take measures to these intelligent economic crimes through manipulation of foreign trade price, Korea needs to improve the law on duty execution and extent of tasks of judicial police managers based on compatibility to actual work. Korea must benchmark the police system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Italy and protect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exclusive organizations for core information analysis by each area like crime funds and flight of properties, and reconstruct border tariff managing the financial police organization who controls the overall system.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이란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으로, 범죄행위에 의하여 오염된 재산을 깨끗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¹⁾: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 (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 세계 연간 자금세탁 규모는 1조 달러, 우리나라는 수십조 원이라는게 정설이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양상은 다른나라와 다른 측면을 보인다. 첫째 전제범죄가 횡령, 배임, 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가 대부분인데 외국의 자금세탁이 주로 마약이나 조직범죄·테러와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관세청에서 적발한 자금세탁 범죄도 대부분 재산도피·횡령과 관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입출금 반복·차명계좌 이용 등 단순 금융거래를 이용한 단순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행위도 국제적 조직범죄단체가 개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장기업, 무역, 카지노 등 고도의 전문적 수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현재 무역을 이용한 세탁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무역 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06년부터 외환 자유화 본격화되어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전면 시행('06~'07)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외화자유화 조

1)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치가 시행될 것이다. 이런 외화 자유화에 편승한 자금세탁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韓-EU, 韓-美 FTA 발효 등 FTA²⁾ 확대에 따른 관세율 인하 효과를 악용한 재산해외도피 및 탈세·사기·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는 등 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자금세탁방지에 관해서는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사법 제도와 금융 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광범위한 자금세탁 중에서도 무역가격조작에 대한 자금세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유형의 범죄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진전되는 가운데 무역량이 확대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무역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은 무역과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 더 위험하고 광범위하게 역이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과 무역가격조작에 관해서는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향후 한국 관세청에 접목 가능한 제도를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금세탁 및 무역가격조작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기본 개념을 설명한 후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 및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일반적인 개념과 이론 설명에 대한 부분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연구 자료, 한국 FIU³⁾ 및 관세청·검찰청 등 자금세탁방지기구의 발표 자료 및 사례 등을 참고하였고 각종 연구지 및 단행본의 내용, 기타 인터넷 상의 정보자료 수집 등을 통한 문헌 조사기법을 사용하였다. 제 3장에서

2) FTA(자유무역협정)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3) FIU(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처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

다른 수출입 무역가격조작 및 신용장 조작 범죄자료는 관세청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사례와 그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자금세탁 및 무역조작에 관한 실례는 무역과 금융이 결합되어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가시화된 통계자료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례에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이 본문은 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논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제 2장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자금세탁 및 무역가격조작에 관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이해를 도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 가격 신고 및 법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무역가격조작 자금 세탁의 사례 분석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무역가격조작의 대표적인 사례인 수출입 가격 조작 및 수입신용장 조작을 통한 범죄 사례를 다루었으며 이 사례들에 관련된 규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실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무역가격조작을 범죄 사례 분석과 관세청 대응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앞장에서 다루었던 사례 분석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을 막는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한국의 세관 조사 업무 및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외 주요국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조사 업무 흐름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인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을 더

욱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변경 방향 및 관세청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앞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2장 자금세탁 및 무역가격조작 정의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금세탁의 정의 및 수법

1. 자금세탁의 정의

1) 일반적 의미의 자금세탁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라 함은 범죄자가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그 재산의 출처, 원천 및 성질 등을 숨기고 정당한 수입인 것처럼 위장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즉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더러운 재산을 깨끗한 재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⁴⁾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자금세탁을 통해서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혼합하여 회계감사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행위를 숨길 수 있다. 또한 불법자금은 세탁하지 않으면 세무당국 및 사법당국 등 법 집행기관에 의해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불법자금을 세탁과정 없이 소비하게 되면 쉽게 적발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관련 불법자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자금세탁을 하는 이유를 보면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새로운 불법행위를 증진시키며, 불법적인 수익의 진정한 원천과 소유주 및 통제방법 등을 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자들은 불법적인 수익을 합법적인 수익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그들이 쉽게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금세탁이란 불법행위를 통해 모은 불법자금을 자금원천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전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김철수,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7.

2) FinCEN의 자금세탁 정의

미국 FinCEN⁵⁾(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자금세탁에 관한 정의를 보면 누가 자금의 소유자인지 숨기고 또한 그 자금을 자산의 형태로 전환시켜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로부터 유래한 돈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자금세탁이라고 한다. 좀더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자금세탁이란, 더러운 돈을 깨끗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세탁은 일정한 절차이고 과정이며 혹은 일련의 행위의 집합체를 뜻한다. 또한 자금세탁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일상의 업무행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불법행위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은 특정불법행위로부터 나오거나 법률의 위반행위로부터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자금세탁 정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자금세탁행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 행위로서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및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행위이다. 둘째,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불법수익 등의 은닉, 가장 행위로서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은닉, 가장한 행위이다. 셋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관세 포탈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

5) FinCen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

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금세탁의 방법

1) 개요

앞에서 자금세탁은 더러운 돈을 깨끗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듯이 자금세탁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치단계(Placement), 반복단계(Layering) 및 통합단계(Integration)의 3단계를 들 수 있다. 배치단계는 자금세탁의 시작단계로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법집행기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소재를 이전하거나 제도 금융기관에 투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반복단계는 소재가 이전되거나 제도 금융기관에 투입된 자금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하여 출처 또는 소유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지속적인 금융거래 등을 반복하는 단계를 말한다. 끝으로 통합단계는 자금세탁의 완성단계로서 반복단계를 거쳐 합법적인 재산인 것처럼 보이는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통합시키는 단계로서 통합단계에 이르면 불법자금을 추적하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1) 배치단계(Placement)

배치단계는 자금세탁의 시작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불법자금인 대규모의 현금을 다수의 소액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대규모의 불법자금을 소지하기 쉽고 의심의 여지가 적은 금융수단의 형태로 전환하여 그 소액자금들을 합법적인 금융시스템(은행 및 소매금융집단 등)에 배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범죄자들에게는 배치단계가 가장 어려운 과정이면서 수사기관 등에 노출되기 쉬운 단계이다. 배치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를 추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6) 김두현,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p.9-11.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으로는 금융기관 등에서의 KYC(Know Your Customer:고객 바로 알기)의 일반화 및 금융거래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치단계에서 범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법으로는 범죄수익을 은행 비밀 금고 등 비밀장소에 은닉하거나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소액으로 분산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시키거나 추적이 어려운 금융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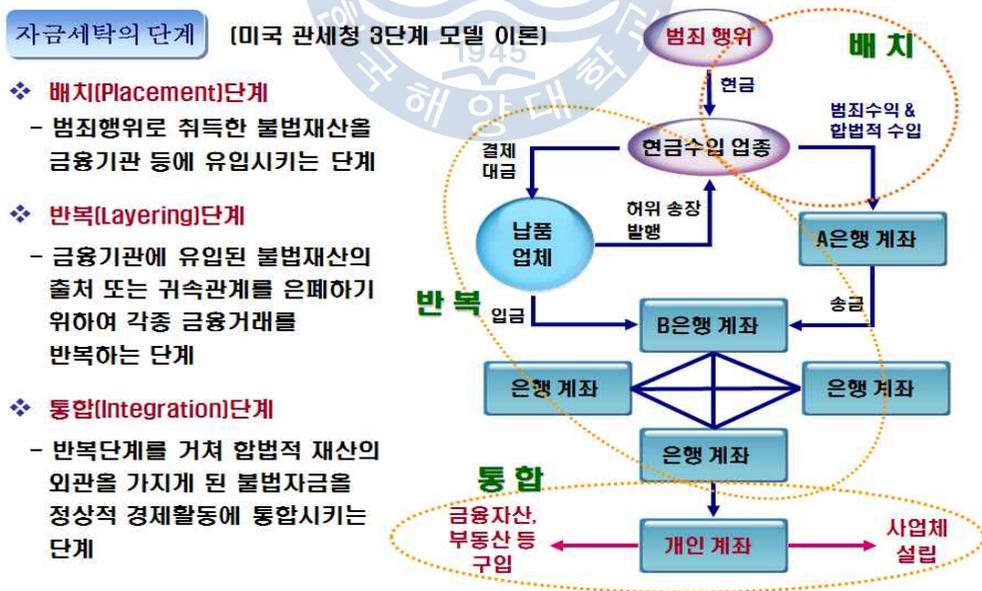
(2) 반복단계(Layering)

반복단계는 배치단계에서 배치된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전시키거나 숨기는 단계로서 금융기관에 배치한 후 은행 등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소액으로 분산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원천, 소유자 및 자금의 성질 등을 숨기는 단계이다. 즉, 반복단계는 범죄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감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거쳐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반복단계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면 다양한 자금을 회전시키는 방법, 타인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전환시키거나 엄격한 은행비밀 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역외은행(Offshore Bank) 등에 예치를 반복하거나 위장기업(Shell Corporation)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전환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법이 동원 된다. 또한 자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산의 출처 또는 소유자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범죄수익을 귀금속 등의 유형적인 재산으로 변경하는 방법, 반복적인 입출금 행위의 수행, 전자자금이체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의 다른 지급수단을 구입하는 방법, 제3자 명의의 차명거래를 통한 반복적인 입출금 또는 송금행위,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된 역외금융기관에의 예치 그리고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서류상회사(Paper Company) 명의로 송금하거나 예치하는 행위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반복단계의 주요 수법이다.

(3) 통합단계(Integration)

통합단계는 반복단계를 거쳐 더 이상 진정한 자금의 출처나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 불법자금을 합법적으로 가장하여 정상적인 금융활동 또는 경제행위에 편입시켜 다른 합법재산과 통합시키는 단계로서 불법적인 재산에 대하여 합법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는 단계이다. 즉,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구입, 회사설립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 자금세탁의 최종단계로써 통합단계까지 성공하고 나면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의 구별은 매우 어려워 사실상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다. 통합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법을 보면, 위장수출에 대한 허위송장 발행 및 수출입가격의 조작 행위, Loan Back의 방법, 위장회사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반환하는 방법, 위장회사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2-1> 미국 관세청 자금세탁 3단계 모델



자료: 김철수,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6

2) 자금세탁의 주요 수법⁷⁾

(1) 자금세탁의 일반적인 수법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세탁행위가 존재한 이후 그 수법은 지속적으로 발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지급수단의 발달, 전자금융의 등장 및 금융기법의 개발과 함께 보다 교묘한 수법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의 일반적인 수법은 대부분이 자금세탁 단계 중 배치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며, 배치단계는 반복단계나 통합단계에 비하여 비교적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배치단계에서 주로 이용되는 수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 현금밀수출(Smuggling)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법이 현금밀수출이다. 현금을 해외로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세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불법자금을 자기앞수표 등 은닉이 용이한 형태로 전환한 후 밀수출하거나 소액으로 분할하여 반출한 후 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 등에 해외에서 취득한 정당한 소득으로 신고하고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불법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자금을 세탁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 국경을 통과하여 출국할 때에는 마약밀수 등으로 획득한 현금을 세관에 보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후 재입국 시 이들 현금을 멕시코에서 발생한 소득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송품장(Invoice), 영수증 등

7)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해설》, 2002, pp.11-19 ; 김두현,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p.33-44. ; 관세청, 《자금세탁의 이해와 조사방법》, 2001, p10-15 ; 김철수,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23-36.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국 시 미국세관에 합법적인 수입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은 현금휴대 입국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자금 세탁자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불법자금을 미국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세탁에 성공하게 되면 예치된 불법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불법행위의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소액분산입금(Structuring or Smurfing)

소액 분산입금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 인출,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에 해당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고서제출의무 대상금액 이하의 소액으로 분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에 의한 현금거래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량의 현금을 미화 1만불 이하의 소액으로 분산하여 입금하는 소액분산입금행위(Structuring)를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s)의 제정을 통해 불법행위로 규정하였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 11. 28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의 유형으로 소액분산입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미화 1만불 상당한 외화 및 2천만원 이상의 원화)의 금융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혐의거래보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4조 제2항에는 일정금액이하라도 상기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은 혐의거래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분산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금세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③ 전위기업(Front Company)을 통한 자금세탁

전위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자금세탁자가 실존하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그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탁하는 것을 말한다. 전위기업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기업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장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원천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고 범죄수익을 기업의 수입인 것처럼 은행에 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금세탁자는 전위기업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자금이 기업의 명의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하여 불법자금과 자금세탁 범죄인과의 관계를 숨길 수도 있다. 다만 전위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단점은 기업의 경우 장부기장의 의무가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법자금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위기업으로는 보석상, 여행사, 수출입상, 보험회사, 주류 판매점, 식당 및 골동품점 등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석이나 골동품 등은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④ 위장기업(Shell Corporation)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장기업이라 함은 명목기업(Nominee Corporation), 주소지회사(Domiciliary Corporation), 유령회사(Ghost Company) 또는 서류상회사(Paper Company)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등록지에서 특별한 제조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재단, 신탁회사 등을 말한다. 위장기업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상호, 주소, 임원 및 주주만이 존재할 뿐이고 사업설비나 직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위장기업은 조세 피난처 등으로 알려진 역외금융지역에 많이 설립하고 있다. 역외금융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립이 간단하고 세금이 없거나 저 세율의 소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며 엄격한 금융거래 비밀보호법 등이 실행되고 있어 자금의 추적이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자들은 이러한 곳에 위장

기업을 설립해 두고 불법자금의 은닉, 처분 및 세탁행위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⑤ 동산 및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을 위해서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매매를 이용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을 서류상 매우 저가로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동 부동산을 매각 시에는 정상가격 또는 고가로 조작함으로써 인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불법자금인 현금을 합법화함으로써 자금세탁을 하게 된다.

⑥ 국제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상품과 용역의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결제가격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탈세, 재산 해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즉 선적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자금의 해외도피 및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자금세탁자들은 수출입상 등 전위기업을 이용하여 실제 구매하지 않는 상품을 수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불법자금의 이동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차액대금의 불법지급 또는 불법자금 해외도피의 방법과 반대로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해외에 은닉해 둔 불법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 등으로 1범죄조직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전위기업과 위장기업 등을 이용한 복합적인 수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금세탁을 할 수 있으나 국제거래는 매우 복잡하고 자금의 국경 간 이동에 따른 노출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2)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수법

① 은행어음(Bank Draft)을 이용한 자금세탁

멕시코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수법으로 멕시코의 자금세탁들은 자국의 은행어음을 통하여 불법자금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선호하며 매년 50만건 이상의 멕시코은행 발행어음이 미국은행에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미국에서 밀수출 등으로 이동한 불법자금은 멕시코 내 시중은행에 입금한 후 이 입금액을 기초로 은행어음(Bank Draft)을 발행하여 미국으로 재반입하여 미국은행에 입금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불법자금을 합법자금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음(Draft)은 현금(Cash)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이용하는 것으로 무역을 가장한 자금세탁의 수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② 담보대출(Counterbalancing Loan)을 이용한 자금세탁

이 수법은 역외금융국가 등에 입금된 불법자금을 담보로 국내에서 동일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된 불법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 자금세탁의 수법이다. 이러한 수법은 대출이자 상환에 따른 면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전위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수법으로 사용되며 론백(Loan Back)이라고도 한다. 불법자금의 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받은 후 그 상환의 명목으로 은닉된 불법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불법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출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세금혜택도 받는 수법이다.

③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자금세탁

최근에는 은행 외에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한 파생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선도거래, 선물거래 및 옵션 등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이전 및 자금세탁의 수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배치단계를 마친 불법자금의 반복, 통합단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파생금융시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이유는 파생금융거래의 유동성과 익명성이 높고, 거래방법 및 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하여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자금세탁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에 비하여 자금세탁 비용이 저렴하고, 선물시장거래 자체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이익과 손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규모의 이익과 손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규모의 자금 이동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파생금융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금세탁의 수법은 거울거래(Mirror Trading)로 중개인의 협조를 받아 두 개의 상반되는 포지션에 서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중개인은 자금세탁자를 위하여 2개의 계정을 개설한 다음 시장에서 등락폭이 큰 상품을 선택하여 1개의 계정은 매입 또는 포지션을 취하고 나머지 1개의 계정은 반대 포지션을 취하여 일방은 이익을 보고 다른 일방은 손해를 보게 함으로써 결제단계에서 정산을 통하여 손해를 본 계정에서는 범죄수익이 인출되고 이익을 본 계정에서는 합법화된 자금으로 입금되게 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개인의 수수료는 통상 10퍼센트 미만으로 자금세탁 전문가에 의한 수수료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다.

④ 사이버 자금세탁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자결제 수단의 발전에 힘입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금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사이버 자금세탁(Cyber-Money Laundering)이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금이전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전자화폐를 이용한 지급 등을 통해서 가능함에 따라 이러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금세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은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신속성, 익명성, 및 감독의 곤란으로 인하여 새로운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는 개인용

컴퓨터의 조작만으로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순식간에 세계 어느 곳으로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으며, 많은 국가가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금세탁자가 신원을 숨기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융거래가 사람간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 없이 순전히 전자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 또는 감독기관이 그 거래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거래인지 정당한 사업상의 거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전자화폐는 현금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기존의 현금이 가지고 있던 원격지 이동 및 보관의 어려움이 없고 비용면 에서도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전자화폐는 자금세탁의 배치단계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을 전자화폐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된 전자화폐로 교환하고, 그 전자화폐로 외국화폐나 상품들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반복단계에서는 금융기관의 직원과 접촉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망과 연결된 자신의 컴퓨터로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즉각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특히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위장기업을 사이버 공간에서 설립하여 전자화폐를 이용한 위장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위장거래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화폐를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신속하게 완료됨으로써 추적이 매우 곤란한 특징이 있다.

(3) 비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① 대체송금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대체송금시스템(Alternative Remittance System)이란 지하금융시스템(Underground Banking System)으로도 불리며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도 금융권에 밖에서 외국에 송금을 하여주는

영업활동을 말한다. 대체송금시스템은 19세기에 서구금융제도가 전파되기 전부터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활용되어 오던 것으로 인도 등 서남아시아의 훈디(Hundi) 또는 하왈라(Hawala)와 중국, 홍콩 등의 치티(Chitti)가 대표적이며 북미대륙에서는 페소암거래시장(Black Peso Exchange)에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환치기'로 불리면서 종종 이용되고 있다. 대체송금시스템은 자금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이 가치를 국가 간에 이 전해 주는 것으로 대체송금업자는 송금회사, 일반 상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당국에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송금시스템은 무역 등 합법적인 목적에도 이용되지만 재산의 해외도피,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세탁 등의 불법적인 목적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대체송금시스템은 공식적 금융기관과는 달리 의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거래의 기록도 남기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 되고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된다.

② 보험회사를 이용한 자금세탁

보험회사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경우 소규모인 경우에는 가명 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현금을 입금하다가 일정금액이 되면 보험약정에 따른 해지수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수표로 해약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현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하는 방법이다. 전문적인 세탁업자의 경우 역외금융지역에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를 설립하고 국내에 적법한 보험판매조직을 통하여 마약판매 수익 등 현금을 허위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후 위장보험사고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③ 카지노 등 도박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카지노는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불법자금으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도박을 하지 않고 카지노에서 딴 것처럼 다시 집을 수표로 바꾸어 세탁하는 수법이다.

미국의 경우 카지노현금거래보고제도(CTRC)가 있으며 이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도박장에서 일일 현금 환전 규모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여러 도박장을 전전하고 날짜를 변경하여 환전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

제 2 절 무역가격조작의 정의

국제무역은 국내거래와 국제거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유형(類型)이 다른 두 가지의 거래형태가 아니고 근본거래형태는 같으나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나라간의 정치, 행정, 화폐, 관세 등의 차이로 인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무역가격은 국가와 국가 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조건을 가리킨다. 무역도 격지간 거래이므로 운송비용이 거대하고 운송중의 위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운송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를 정하여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이들을 부담하는가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한 것이 국제무역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역가격은 상품과 용역의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결제가격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 재산 해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즉 선적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자금의 해외도피 및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자금세탁자들은 수출입상 등 전위기업을 이용하여 실제 구매하지 않는 상품을 수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불법자금의 이동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차액대금의 불법지급 또는 불법자금 해외도피의 방법과 반대로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해외에 은닉해 둔 불법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 등으로 1범죄조직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전위기업과 위장기업 등을 이용한 복합적인 수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무역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

전위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자금세탁자가 실존하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그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탁하는 것을 말한다.

전위기업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기업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장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원천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고 범죄수익을 기업기업의 수입인 것처럼 은행에 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금세탁자는 전위기업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자금이 기업의 명의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하여 불법자금과 자금세탁 범죄인과의 관계를 숨길 수도 있다. 다만 전위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단점은 기업의 경우 장부기장의 의무가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법자금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위기업으로는 보석상, 여행사, 수출입상, 보험회사, 주류 판매점, 식당 및 골동품점 등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석이나 골동품 등은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위장기업이라 함은 명목기업(Nominee Corporation), 주소지회사(Domiciliary Corporation), 유령회사(Ghost Company) 또는 서류상회사(Paper Company)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등록지에서 특별한 제조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재단, 신탁회사 등을 말한다. 위장기업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상호, 주소, 임원 및 주주만이 존재할 뿐이고 사업설비나 직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위장기업은 조세 피난처 등으로 알려진 역외금융지역에 많이 설립하고 있다. 역외금융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립이 간단하고 세금이 없거나 저 세율의 소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며 엄격한 금융거래 비밀보호법 등이 실행되고 있어 자금의 추적이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자들은 이러한 곳에 위장 기업을 설립해 두고 불법자금의 은닉, 처분 및 세탁행위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장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의 사례 분석

제 1 절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범죄 사례

1. 사례 1) 2000년 ~ 2010년. A 주식회사는 방위사업청에 군함 장착 음파 탐지기센서를 납품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 60억원을 편취.⁸⁾
2. 사례 2) 2000년 ~ 2010년. B 주식회사는 방위사업청에 K1A1 전차조준경,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을 납품하면서 렌즈 원재료(게르마늄) 수입가격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27억원을 편취.⁹⁾
3. 사례 3) 2005년 8월 ~ 2007년 6월. C 주식회사는 방산물자 수입품 70여 종에 대해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하고 조작된 가격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97억원의 국가제정을 편취하여 국외 도피.¹⁰⁾
4. 사례 4) 2008년 ~ 2009년. D 주식회사는 태국 현지에 불법 설립한 현지법인에 국내에서 폐차 직전의 골프용 카트를 저가로 구매하여 신차인 것처럼 수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은행으로부터 용자받아 물품을 허위 수출.¹¹⁾
5. 사례 5) 2007년 2월 ~ 2010년 6월. 코스닥 상장업체 E 주식회사는 매

8) 부산세관 검거, 2011년 3월 25일.

9) 서울중앙지검 검거, 2010년 2월 25일.

10) 서울중앙지검 검거, 2010년 12월 29일.

11) 부산세관 검거, 2009년 3월 25일.

입,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분식회계 목적으로 상품가치가 없는 불량 웨이퍼 및 실리콘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519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 도피.¹²⁾

6. 사례 6) 2007년 7월 ~ 2010년 7월. F 주식회사는 국내 본사에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중국 현지법인으로 자동차용 안전벨트 부분품을 수출하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로의 수출가격을 30%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한민국 재산인 한화 153억원을 홍콩으로 도피, 은닉.¹³⁾

7. 사례 7) 2005년 8월 ~ 2011년 10월. 코스닥 상장업체 G 주식회사는 국내 본사에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중국 현지법인으로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시트를 수출하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로의 수출가격을 10%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한민국 재산인 한화 55억원을 홍콩으로 도피, 은닉.¹⁴⁾

제 2 절 수입신용장 조작을 통한 범죄 사례

1. 사례 1) 2007년. 부산세관은 중국산 조강의류의 수입가격을 부풀려서 허위신용장을 개설하고 허위 선적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은행동 미화 60만불(한화 7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아파트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서울 강서구 소개(주) H사 대표 조모씨(남, 52세)와 경기도 성남시 또 다른 F사 대표 강모씨(남, 48세)를 재산국외도피 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함.

12) 서울세관 검거 2010년 12월 2일.

13) 서울세관 검거, 2011년 1월 27일.

14) 인천세관 검거, 2011년 10월 12일.

- 조씨는 중국에서 의류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강씨가 중국내에서 조강용 의류 상의 미화 7.6불, 하의 미화 4.8불짜리의 재고품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은행돈을 빼돌리기로 공모함. 이후 상의는 미화 19불, 하의는 12불로 부풀려 총 3차례에 걸쳐 허위 수입신용장 개설.

- 이후 조씨는 고의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범으로 수입자를 대신해 대금 지불 의무가 있는 국내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강씨의 중국공장신용장상 물품금액 100만불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미화 60만불(한화 7억원) 차액을 국외로 불법 이동 도피시킴.¹⁵⁾

2. 사례 2) 2010년. 부산세관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서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A사 대표 P씨(53세, 남)을 검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구속 송치하였음.

- P씨는 중국소재 수출자인 B사 대표 J씨 미국소재 수출자인 C사 대표 L씨 등과 실제 선적된 물품이 서류상 물품과 다르더라도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개설은행에서 신용장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신용장의 추상성'을 악용하여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의 방법으로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기로 공모하였음.

- 이후 국내 두 곳의 은행에서 상품가치가 별로 없는 저급품의 중국산등 의류에 대해서 고가의 의류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미화 1백3만200불

15) 부산본부세관 블로그 참조

상당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함.

- P씨는 중국 및 미국에서 물품을 선적하여 2009년 2월 18일 및 2월 25일 부산소재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인수를 고의로 거절하여 국내 신용장개설은행에서 3월 3일, 11월 9일 중국 및 미국소재 매입은행에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미화 1백3만2000불 상당(한화 14억원 상당)의 국내 재산을 중국 및 미국으로 도피시킴.

3. 사례 3) 2011년 10월 13일. 부산세관은 수입신용장을 악용하여 미화 백만불(한화 11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박모씨(남, 53세)를 적발하여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공모자인 해외의 수출업자 P를 지명 수배함.

- 부산에 소재한 A수산 대표인 박모씨는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칠레에 있는 수출업자 P와 사전에 공모하여 국내은행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후,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

- 이후 박모씨가 계약내용과 물품이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않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추상성에 따라 수입대금을 P의 거래은행에 대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박모씨는 이를 교묘히 악용함.

- 부산세관은 해외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모씨가 그 돈의 일부(한화 5억원 상당)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국내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은닉, 자금 세탁한 사실도 추가 적발됨.

4. 사례 4) 2011년 4월 6일. 부산세관은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로 S사 대표 G씨(남, 50세)를 검거,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

- G씨는 중국인 C씨 등과 신용장 사기를 통해 국내 재산을 중국으로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2007년 3월과 4월 부산 소재 은행 2곳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중국산 냉동꽃게 42톤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미화 74만 4800불(한화 6억 8800만원 상당)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함.

- G씨는 중국에서 물품을 선적해 2007년 4월 부산에 있는 냉동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인수를 고의로 거절, 국내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같은 해 5월 중국 매입은행에 대신 지급함으로써 거액의 국내 재산을 중국으로 도피시킴.

제 3 절 범죄사례 분석과 대응 한계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사범의 검거 실적은 15건, 피해금액 약 3천만 달러에 이르며, 주요 대상품목은 의류, 원단, IC, 수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으며, 건당 피해금액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6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입 가격 조작 부분 또한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일어나며 건당 피해 금액이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가격조작 관련 사기-횡령 사건은 일반 사기-횡령사건에 비해 평균금액이 크고(2010년 기준, 전체사기사건-47,000,000원: 관세청 수출입 관련사건-1,167,900,000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지대하다. 그러나

일반 사기-횡령과 달리 직접적인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죄 혐의 포착이 매우 어렵다. 수출입 관련사기, 무역가격조작 등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서는 수출입-외환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수적인데, 관세청만이 이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무역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만 수사할 수 있을 뿐, 범죄행위의 본질인 사기-횡령 또는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무역 관련 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 세탁 및 국외 재산 반출 범죄에 대한 대응 한계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처벌규정의 흠결

1) 관세법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죄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저가신고를 통해 과세가격을 낮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액과 관련하여 저가신고를 한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지만 재산 도피, 부당이득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가신고는 관세법 제276조의 단순한 허위신고죄로만 처벌하고 있어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2)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제43조는 가격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은 제53조의 벌칙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가격조작 행

위의 목적을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당이익의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가격 조작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무역 관련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비효율성

1) 신종범죄의 특성과 확대 가능성

관세청이 검거한 수출입 관련, 사기, 비자금조성, 재산 국외도피 사건은 전관세 또는 무관세 품목이 주로 이용되는 특성이 있다. 즉, 관세 부담이 낮거나 없는 것을 악용하여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이를 사기 등의 수법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FTA의 확대에 의한 저 관세, 무관세 품목의 증가는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범죄 발생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종범죄 수사절차의 문제점에 따른 비효율성

관세청이 검거한 수출입 기업 비리의 핵심은 수출입 거래를 이용한 사기, 횡령, 비자금 조성인데 이는 관세청의 수사권 범위 밖에 존재하는 영역이다. 때문에 관세청의 많은 수사요원들은 수출입을 이용한 비리사건 수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권의 한계로 수사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본질인 사기는 외면한 채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 대외 무역법상의 가격조작 죄 등 경미한 범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사절차는 동일한 위법사실에 대한 중복적 조사내지 수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로 인한 비효율성은 특히 해당 관계국민의 측면에 있어 자신의 법적 지위와 위반 행위에 따르는 법적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실질적 국민권의 보장

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3) 전문화된 행정업무영역에서의 비효율적 업무 수행

무역가격조작을 이용한 사기-횡령 사건은 일반 사기-횡령사건에 비해 평균금액이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나, 일반 사기-횡령과 달리 직접적인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어 범죄 발생여부 및 혐의 포착이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무역가격조작을 이용한 사기 등 불법행위 혐의 포착을 위해서는 통관-물류-외환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이 필수적인데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세청이 수사권이 없어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관세청에 의한 전문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고 국외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개념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제 4 장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의 대응 방안

제 1 절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개관과 관세행정상의 특성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1) 특별사법경찰의 개념

(1) 사법경찰작용

사법경찰작용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 체포 등 형사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작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과 국토해양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의 경찰, 해양경찰이 수행하지만, 이들 기관 이외에도 수사권을 행사 국가기관 혹은 공무원 개인, 공인이 존재한다. 즉 사법경찰작용이라 함은 법률상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작용을 말하는 바, 현행법상에 의한 수사기관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가 있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에 속하고,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및 제2항)이들 사법경찰관리는 각각(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 및 수사보조기관으로 공소제기와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하는 등 범죄수사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때 사법경찰관리 또한 수사기관에 해당되지만, 모든 수사는 검사가 주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며, 사법경찰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게 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념과 취지

위와 같은 (일반)사법경찰관리 이외에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법

률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특수한 영역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법 제197조에서는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시행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7조가 예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가운데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매’는 과거의 담배, 소금 등에 대한 전매제도가 사라졌으므로, 당연히 규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현행 형사소송법이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지만, ‘세무’, ‘군 수사기관’은 약간의 법 형식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세무’에 해당하는 분야 중 관세공무원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세청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군수사기관의 경우 군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용물 범죄나, 군사비밀보호 등의 경우에만 동 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군사법경찰관리로서의 근거는 군사법원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근거가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세법 상의 세관공무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등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는 달리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으나, 해당 직무 내에서의 그 권한과 지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것과 동등하다. 요컨대,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함은 특별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받

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마찬가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 등을 가지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관하여 우선 특별사법경찰이 본해 행정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적 또는 지역적 제한을 붙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 또는 해당 행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라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특별사법경찰을 특별행정범(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행정수요의 증대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의 영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복지 국가의 특성과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과 별도로 독자적인 위상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며 그 인정근거는 행정적인 전문성에 있게 된다.

원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탈경찰화와 관련이 있는 제도라고 한다. 탈경찰화 과정에서 본래적 의미의 '경찰력=국가의 물리력'이 다양한 행정기관에게 분배된 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즉 본래의 경찰기능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 경찰화하면서 조직적으로는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서 분리되어져 나갔으나, 기능적으로는 유사한 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기능적 의미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이라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즉 특별사법경찰은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에 있어 효과적이고 적정한 수사를 위해서 일반사법경찰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인정근거로 전문성보다는 지역-적용대상의 제한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더 큰 비중을 두

면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특별사법경찰의 신설이나 그 권한의 확대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

(1)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적 특수성을 지니는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 활동만으로는 범죄 발견, 증거 수집-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사건 관련 내용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신속하고 정당한 사법경찰권의 발동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보완하고 행정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공무원이 범죄의 발견 시 신속하게 수사 작용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사법경찰제도에 있어서도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개별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일반사법경찰보다 해당 영역에 대한 업무관련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질서유지행정작용과 같은 일반 행정업무와 사법경찰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 훨씬 유용할 수 있다. 일반사법경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부분의 범죄수사에 관여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무분야에 한정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과 아울러 수사여건, 수사 환경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사법경찰의 경우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고발된 사건의 처리에도 벽찬 형편이어서 각종 특별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높고 수사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2) 업무 현장과의 공간적 접근성

특별사법경찰은 개별 행정영역에서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개별 행정 영역에서의 실무담당자로서 예상되는 범죄의 다발지역 혹은 범죄의 현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 등에 대한 내부적 사안에도 밝다.

예를 들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의 장과 소속공무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장과 소속공무원, 보호감호, 치료감호시설의 장과 소속공무원,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보훈처,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의 선장과 해원, 항공기의 기장과 승무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의 특성상 범죄의 발생, 발견 지역이 교도소, 소년원, 등대, 운행 중인 기차, 국립묘지, 국립공원, 운행 중인 선박, 항공기 등 일반경찰의 신속한 접근이 곤란하거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역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업무 장소에서의 범행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현장과 위태상황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장소적 특수성에 근거하여 관할구역 내의 모든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에 따른 제한은 가하지 않고 공간적 제한만을 가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전문적 행정영역에서도 환경, 보건 등 주된 범죄발생지가 업무영역인 경우나, 일상적인 단속활동(행정조사)이 곧 범죄의 발견인 경우, 예를 들어 직무상 조사, 순찰활동 중에 혹은 주민신고 등에 의하여 공장의 폐수 방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한 증거의 수집 및 확보를 위한 사법경찰권 행사를 통해 즉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지역적 근접성 보다는 사항적 전문성이 더 주된 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1956년) 이유를 살펴보면,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특수 행정 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에 근거하여 부적당하고 심히 곤란하여,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 197조에 기하여 이들 특수 행정 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그 수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행정 분야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그 부문에 있어서의 범칙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어 오히려 이들 특수 행정 분야는 직접 담당 또는 취제하여 그 부문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케 함이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법안을 제출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수적으로 일반경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이 개별 행정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검찰청서기, 서기보, 형무소장, 소년원장, 산림주사, 산림주사보가 당연직 특별사법경찰로서 존재하였고,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는 전매 공무원, 마약 또는 아편단속 공무원, 등대 공무원과 선장과 해원이 있을 뿐이어서, 초기에는 오히려 주로 장소적 특수성 중심이었다가 이후의 개정과정에서 사항적 전문성 중심으로 부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제시대 인 1927년 총독부령 제33호로 도입된 이래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 법의 개정사를 통해서만 언젠가 제도의 호황에 있었던 셈이다. 왜냐하면, 이법의 모태가 된 일본에서는 여전히 14개 분야에 머물러 있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라에서는 이미 50여개 분야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이 법의 적용범위, 즉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횟수는 67회 정도이나, 상당 부분이 정부조직 개편이나, 타법 개정에 따른 것이 많아서 정확한 실체규정 변천의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20회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정 당시 제5조 각호가 10개 호였던 것이 현재 40개 호로 되어 있음을 보면 그 확대일로의 과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특별사법경찰의 종류와 업무영역의 확대화의 전개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 정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1956년 1월 12일 제정되었다.[법률 제380호, 1956.1.12. 제정] 이는 행정영역 가운데 특히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특수 행정 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우 곤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이들 특수 행정 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들 특수 행정 분야를 직접 담당하여 그 부분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검찰청과 그 지청근무의 서기 또는 서기보로서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당해 검찰청 또는 당해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서기는 사법경찰관, 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게 한다.
- ②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형무소관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게 한다.

- ③ 영림서 및 그 관리소, 중앙임업시험장 및 출장소,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는 산림주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
- ④ 해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기관부·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
- ⑤ 영림서등에 근무하는 3급 내지 5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자는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2) 1962년 일부개정

동법은 1962.9.17을 기하여 출입국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하고, 개정된 형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구치소를 둘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구치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치소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된바 있다.[법률 제1144호, 1962.9.17, 일부개정]

(3) 1970년 일부개정

동법은 1970년 7월 19일을 기하여 부정식품 및 의약품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업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5급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하고자 개정되었다.[법률 제2203호, 1970.6.18, 일부개정]

(4) 1977년 일부개정

동법은 1977년 1월 1일, 대마관리법 개정(1967.4.7, 법률 제2895호)에 따라 1977 대마감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마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개정되었다.[법률 제2904호, 1967.12.22, 일부개정]

(5) 1990년 일부개정

동법은 1990년 8월 1일에 공중위생사업소에 대한 단속, 공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마약류의 불법수출입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공중위생관계공무원, 환경관계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매범처벌절차법 폐지, 마약법등의 개정, 임업시험장직제등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라 개정 되었으며,[법률 제4245호, 1990.8.1, 일부개정]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보건사회부 및 시, 도의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중위생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 ② 환경처 및 시, 도의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 ③ 관세청의 세관공무원에게 공항, 항만 및 보세구역 안에서의 마약사범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 ④ 전매지청, 전매서의 전매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건사회부 및 시 도의 마약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삭제하는 것 등이었다.

(6) 1995년 개정

동법은 1995년 1월 5일, 국제화, 개방화 추세 및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외화 등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및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세관공무원 및 체신관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한편, 과적차량 등에 대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운행제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개정 되었다.[법률 제4928호, 1995.1.5, 일부개정]

(7) 1997년 개정

동법은 1997년 12월 13일에 경제여건 변화에 편승하여 급증하고 있는 수출입관련 외환사범, 무역사범 등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사범 및 청소년유해사범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교정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16개 환경 관련 법률과 정부조직법등 관계법령이 재, 개정됨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된 바 있으며,[법률 제5429호,1997.12.13.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정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관할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법 제3조제4항,제5조제1호의2 및 제6조제1호의2).
- ②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을 수 있는 자연공원관리업무 공무원의 범위에 내무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쓰레기 투기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중 일부 범칙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법 제5조 제18호 및 제7조의2).
- ③ 관광지도공무원,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수입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법 제5조제28호 내지 제32호 및 제6조제23호 내지 제27호).
- ④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아 환경관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새로이 제, 개정된 환경 분쟁 조정법 등 16개 법률에 규정된 범

죄를 추가하고, 정부조직법등의 개정으로 행정부처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법 제4조 내지 제6조) 등이었다.

(8) 1999년 개정

동법은 1999년 12월 28일에 불법적으로 제조되거나 밀수입된 농약과 비료의 유통을 적극 차단하고 하천에서의 무단골재채취 등 하천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로 구역 안에서의 장애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시설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내가축방역 및 검역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1999.5.24, 법률 제5982호)되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환경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9) 2000년 개정

동법은 2000년 12월 29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업 등에 관한 단속업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식물 방역관으로 임명된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에 따라 일부개정 되었다.[법률 제6311호,2000.12.29, 일부개정]

(10) 2003년 개정

동법은 2003년 10월 19일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에 대한 단

혹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고 및 체신청 직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프로그램저작권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설비에 관한 범죄의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6924호, 2003.7.18. 일부개정]

(11) 2006년 개정

동법은 2006년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사무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식품, 보건, 환경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 이하는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법률 제7964호, 2006.7.19, 일부개정]

2. 관세행정상의 특별사법경찰제도

1) 관세행정상 관세범의 성격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연혁

(1) 관세행정상의 관세범

현행 관세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 처벌 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295조(사법경찰권)에서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여 관세범의 의무위반행위 설정에 따른 구분과 이에 대한 제재 주체로서의 세관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

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형식과 내용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관세법은 협의의 관세법을 의미하며, 이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를 말하며, 형벌이 과해지는 점에서 일반 형사법과 동일하나, 관세행정의 특수한 성격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세행정의 목적달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형벌이 과해지는 위반행위로 행정적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법이자 경제법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관세법의 제정 당시에는 벌칙규정은 재산상의 부당이득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여 벌금형 및 과료형에만 국한되어 규정된 바 있으나, 이후 밀수범이 점차 격증하고 그 범죄수법이 고도화, 흉악화 되어 국가재정을 혼란케 하고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면서 벌칙규정에 있어서도 일반 형사법처럼 자유형까지 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66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상범죄에 포함한 바 있다. 이는 관세범죄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써 행정법적 성격과 형사법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적 성격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 평가 할 수 있겠다.

(2) 특별사법경찰제도 연혁

나날이 변화되는 관세행정 상 실무적, 법제적 흠결을 이용한 관세법의 전무화와 다양화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위한 입법적 조치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한 수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 되어지고 있다.

<표 4-1>은 수출입 관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전개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수출입 관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의 전개

구분	연도	단속범위
관세	1949	모든 관세사범(세관장 전속고발권 보유)
대외	1995	수출입물품 가격조작
대외	1997	모든대외무역사범(원산지, 전략물자 포함)
지재	1995	수출입·환적물품과 관련된 지재권사범
마약	1990	항공기·선박, 공항만, 보세구역 내 마약사범
외환	1995	외국환·귀금속 불법수출입
외환	1997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사범
외환	2008	수출입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본거래사범
자금세탁	2001	상기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사범
재산도피	2008	상기 범죄에 대한 특정법상 재산국외 도피사범

자료 : 김길주, 「관세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조사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27

2) 관세행정상 특별사법경찰제도 직무범위 및 특성

(1) 일반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90조).

세관 공무원은 누구나 관세범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세범에 대한 주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행하게 된다. 또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는 조사, 즉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동행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있다.

(2)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범위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법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장의 지명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 : 4급~7급, 사법경찰관리 : 8급~9급)가 된다. 또한 관세법 제295조에서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영장을 요하는 범인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조사의 경우, 피의자의 재산권은 물론 일신상의 자유권에 대한 직접적 침익을 의미하는 바, 영장 등 엄격한 형사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자의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세관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청하여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만이 강제조사를 행할 수 있다. 7급 이상의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구속영장의 신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8내지 9급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96조).

관세법 제295조(사법경찰관) 및 제296조(수색·압수영장)의 규정은 이러한 강제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며, 지명을 받은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사범,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사범, 마약류사범 등에 관해서도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표 4-2>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세관공무원의 수사권한을 요약한 것이다.

<표 4-2>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세관공무원의 수사권한

종류	수사대상 범죄 발생지역	수사대상 범죄
관세범	소속관서 관할 구역 내	관세범 위반사범
대외무역사범	소속관서 관할 구역 내	대외무역범 위반사범
지적재산권사범	소속관서 관할 구역 내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외환사범	소속관서 관할 구역 내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 16조 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같은법 위반사범
마약사범	소속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마약·행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3) 관세법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조사와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의 차이점

관세법의 조사는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하기위한 준비절차로써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를 의미한다. <표 4-3>은 형사소송법상 조사와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법상 조사와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과형권 행사를 위한 전단계의 행위인 점에서는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 4-3> 형사소송법상 조사와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의 차이점

구분	형사소송법상 조사(수사)	세관공무원의 조사
목적	일반범죄의 공소제기 및 유치	관세법상 조사로써 통고처분 또는 고발처분
집행권자	검사, 사법경찰관리	세관공무원
법적 구속력	형사소송법의 적용	일차적으로 관세법 적용, 이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적용

(4)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관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세관 공무원의 조사는 관세법에 의한 독자적인 권한이므로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주재권자인 검사의 지휘-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은 세관 공무원이 관세법에 대하여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지명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법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검사가 수사, 소추하게 되므로 동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

관세법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조사 전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관세법에 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관세법 제 284조 2항).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특정 관세법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압수품의 관리, 압수품 환부 시의 관세징수, 범죄물품의 감정, 병합할 벌금의 범위결정, 포상, 통계관리 등의 필요가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관세법에 대해서도 관세법상 형법규정의 배제, 법인처벌, 양벌, 몰수 등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일단 세관에 인계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제 2 절 주요국가의 특별사법경찰제도

1. 프랑스 특별사법경찰제도

프랑스에서의 경찰활동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행정경찰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찰기능의 수행을 말한다. 프랑스 인권선언의 제4조와 현행 헌법 제34종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핵심사상으로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나 제한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합법적일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의 목적은 공공질서의 유지, 확보에 있다고 하며, 전통적으로는 행정경찰개념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에 근거, 공공질서의 유지가 갖는 의미로는 평온, 안전, 위생에 관한 것으로 무질서, 사고, 질병, 공중위생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개별적 이거나 집단적인 손해를 피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의 경찰업무는 개혁시기 전까지 명백히 구분되는 세 개의 다른 기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세관-철도공안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경찰업무를 제외하면, 프랑스의 경찰업무는 내무부에 속하는 국가치안국과 파리경찰국 그리고 국방부의 헌병 및 군사사법국의 3개 기관이 나누어 책임을 담당하여 운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의 발생에 따라 20세기 초에 들어와 (1941년, 1966년)경찰조직 개혁을 통하여 경찰조직의 집중화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에 국가 치안국을 개편할 때, 파리경찰국의 조직과 헌병의 자치조직은 그대로 존속시켰으나, 1966년 법률은 국가 치안국 소속의 공무원과 파리경찰소속과의 공무원을 모두 국가경찰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특별법에 의한 사법경찰권 부여 및 제한적 직무범위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로 삼고 있다. 사법경찰장교(형소법 제16조), 사법경찰리(형소법 제20조), 사법경찰리보조(형소법 제21조) 및 형소법 제28종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리는 지금까지 언급한 세관공무원, 노동행정감사관, 철도공안원, 우정정보통신 공무원, 건설토목직공무원, 국립공원공무원, 증권거래공무원 등이다.

국토산림청, 이와 유사한 기관의 공무담임권자, 농촌경찰 등은 과거부터 산림감사원 등으로 통칭되어 왔던 사법경찰관리로써, 지금도 농촌 및 산림관련 재산 등에 대한 경죄와 위반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사법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조 이하), 농촌법 제L.217-1조에서 농업, 임업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권한을 부여한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고, 검사가 이를 승인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방공무원에 속하는 농촌자치경찰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5종의5에 의하면(통합

자치법 제L.2213-19조) 이들은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으나 이들 역시 특정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는 사법경찰공무원의 한 종류에 속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29조에서는 주로 재산 등을 보호하는 특별관리공무원으로서 공공재산 및 시설의 보호, 감시를 위한 경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법원에서 검찰 앞에 공직수행 전 의무적으로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이 허가한 선서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8조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특별사법경찰관리), 이들의 주요임무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 및 범인 색출 등을 기본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특별법에 때로는 특정한 조사권만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특정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률이 정하는 제한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세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어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하나의 특별법이 아닌, 여러 법률에 의한 중첩된 근거를 통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 사법경찰관에게 특정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특정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2) 전문직렬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 세관공무원

관세국은 관세법에 의해서 중요한 경찰권의 일부를 부여받아(관세법 제 323-3조 등) 범법행위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기관의 허락을 받고 가택수색권이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 체포와 임시구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하고 있다. 이때 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구류의 시간은 궁극적으로 사법경찰장교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있다. 일반 공무원으로서 기업의 경쟁, 재정운영 등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예방, 퇴치하고자 경쟁소비사기퇴치총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상법 제L.450-1조 및 소비자법 제L.215-1조 등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 불법경쟁체제유지, 소비자보호 및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범법행위를 전국적으로 단속고발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직무를 수행 한다.

(2) 산림공무원 및 재정부 경쟁가격 및 경제사범단속국 관리공무원

도청의 농업임업행정국은 산림관리 및 보호원의 권한을 행사하며, 경쟁가격 통제국에서는 재정부에 속한 A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으로서 1심 법원의 허가서에 의한 사법권의 허락을 얻고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장소를 방문수색”할 수 있다(1986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86-1243호 제45조, 48조). 경제사범단속국은 경쟁소비사경제사범단속총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소비자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생산물과 서비스 용역에 대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표본을 수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방문 수색할 수 있다. 소비자법 제222-3종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범법행위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낮에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소비자법 제222-2조).

(3) 노동부 노동감사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

노동감사관은 노동법 제 L.611조 이하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부여받아 행사한다.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은 증권거래를 교란하거나 증권사기범에 대해서 탐색수사(증권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1989년 8월 2일자 시행령)를 한다.

(4) 우정정보통신 공무원 및 아동보호관

우정정보통신 공무원에 대하여서 특별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직

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 또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아동보호관에 대해서도 어린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2000년 3월 6일 법제2000-196호에 의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5) 조세 및 화폐관리 공무원

화폐위조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산법, 관세위반에 대해서는 관세법, 조세 및 재정위반에 대해서는 조세법 등에서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1) 지방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받는 전문직렬

지방공무원으로서 차량의 불법주차단속과 주정차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차단속 공무원은 도로법 제250-1조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 공용도로 감시공원 겸 교통통제 담당 공무원은 주차위반 범죄, 공용도로 상에서의 범죄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들은 경찰관의 신분은 아니지만, 검찰로부터 교통질서 위반 단속권의 소지 인증 및 경찰 직무에 대한 선서를 거쳐 관할 시공무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치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

1999년 자치경찰법 이전에는 주차경찰 특별경찰에 한정되어있으나, 이후 자치경찰의 사법경찰권이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은 행정경찰작용의 연속선상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프랑스 자치단체장(시장)의 자치경찰권 집행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은 행정경찰직무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현대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행정경찰권의 활동범위 및 이에 대한 예방, 사후처리 등의 긴급성, 공공성 확대에 인하여 제한적인 사법경찰작용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연장되면서 특별사법경찰권 분야로 직무수행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프랑스의 경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 권한부여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그 권한행사를 통제하는 사법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놓이고 통제 및 제재를 받게 된다. 사법경찰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사법경찰은 검사에 의하여 지휘 받고, 고검검사장에 의하여 감독 받으며, 고등법원 형사소추결정부에 의하여 통제된다” 라는 표현이다.

(1) 지휘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12조).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기초조사, 중죄-경죄의 현행범에 대한 조사를 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범죄 피의자 및 참고인을 보호-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에게 특정 행위나 특정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감독

사법경찰에 대한 고검검사장의 감독권은 형사소송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의 감독권은 사법경찰관에게 주로 행사된다.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고검검사장으로부터 근무지 부여명령을 받아야 하며, 고검검사장은 위 명령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에 대한 경계를 행할 수 있다.

(3) 통제

고등법원 형사소추결정부의 통제권은 사법경찰을 통제하는 사법기관 중 가장 강력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고등법원 형사소추결정부는 과오를 범

한 사법경찰을 징계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27조), 아울러 사법경찰의 기능수행을 일시적 또는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

2. 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미국에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특정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정부-시정부 등 제복경찰과 달리, 특별분야와 관련한 제한적인 수사권 등을 가진 법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찰권을 가진 경찰관이 아닌, 주로 연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법집행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기관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이는 흔히 미국의 경찰을 자치제 경찰로 이해하고 미국의 경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자치제 경찰조직인 캔사스시 또는 시애틀시의 경찰국을 모델로 하여 그 조직과 기능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고 올바른 접근법이라 오인하여 종래의 연구가 진행되어져 온 바 있음에 근거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은 경찰관 이외에도 보다 넓은 의미에서 법집행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일반경찰이 아닌 법집행기관으로서 수사권 등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하게 되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경찰관, 보안관 등 정복의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법집행기관의 특정한 법집행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이해할 수 있다.

1) 특별사법경찰의 집행수단

(1) 조사(집행)권

연방정부의 집행기관은 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사권 집행을 위하여 증인심문 등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러한 법집행 권한은 영미법계 특성상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조사권 행사를 위한 권한으로 감사, 수사 탐문, 체포 등을 행사하며, 규제행위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행정처벌권

미국 행정법상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허가취소, 정지, 금지, 민사, 형사고발, 선취권, 징발, 출두명령, 재산압류 등이 있다.

(3) 법원출두명령, 소환장

행정기관의 규제행위 집행을 위한 기본적 행정활동 강제권으로 소환장(법원 출두명령권) 발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미국 행정절차법 제555조.c,d).

2) 뉴욕시 경찰청

지역수사대의 수사지원 및 지도를 담당하는 형사국에 중앙수사정보부, 법과학수사실, 범인추적실, 특수수사부 등이 있다. 중앙정보부 산하에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팀에서는 여자형사를 중심으로 24시간 성범죄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수수사부에는 중범죄수사팀, 자동차범죄수사실 등 범죄 분야별로 수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정부 수준의 대학경찰은 사실상 특별지역경찰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 대학경찰은 주로 시정부의 자치법규(조례)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법집행기관(특별사법경찰)으로서, 일반적인 체포권과 대학 내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을 행사한다. 대학경찰의 관할구역은 보통 대학캠퍼스 내에서 한정되지만, 일부 주 전역에 특정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3) 주정부 특별사법경찰

각 주에 보안관을 두고 일반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는,

① 보안관(Deputy Sheriff) : 농촌 또는 경찰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면서 시

민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고 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안관

② 철도공안 : 주지사가 선임하는 철도회사의 철도를 지키는 철도공안

③ 세무조사원 : 세금관련 수사권을 가진 세무조사원

④ 공안안전부에 근무하는 마약조사원

⑤ 공원 보안관 : 자연광물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자원부 소속의 공원 보안관

⑥ 이외에도 산림보안관, 환경보호관, 병원 보안관, 공공재단 보안관, 주립대학교 보안관, 회계감사 조사관,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있다.

4) 연방정부 특별사법경찰(법집행기관)

이민 귀화국, 연방 교도국, 연방수사국, 관세국, 국세청, 우정국, 비밀정보국, 마약수사국, 법원사무국, 연방보안관실, 국립공원관리국, ATF, 의회경찰, 야생동물 보호국, 산림국 등의 법집행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 전문기관, 청사경비 담당, 지원의 비행적발 담당 및 연방헌법 범위 내에서 제정된 연방법을 집행하는 기관 등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법무부 산하

① 연방검찰청 및 연방보안관실

전국 94명의 검찰청장이 연방법령을 집행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대리인이다. 연방법원의 판사, 증인, 죄수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연방보안관실의 특수요원은 94명으로 관할재판소의 법정관리, 법정경비, 체포영장, 기타영장, 소환장의 집행, 연방범죄피의자의 호송, 증인의 신병경호 지방의 소요진압 등의 임무도 함께 수행한다.

② 형사국 및 마약수사국

형사국의 주요임무는 조직범죄, 사기, 공안, 국제범죄 등의 단속에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각 마약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1973년 발족한 마약수사국의 주 임무는 마약 및 규제약물에 관한 법령의 집행으로 마약재배, 제조, 운반 등에 관한 위반을 수사하고, 민사 및 형사소송을 담당한다.

③ 이민 귀화국 및 범집행 조정청

이민 귀화국은 외국인 불법입국의 단속, 불법체재외국인의 구류와 송환, 외국인 체류자격의 심사, 구화의 심사와 승인신청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1968년 존슨 대통령에 의해 지방경찰, 법원, 교도소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정청은, 지방 범집행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충실, 수사의 질적 강화를 위한 감식기수레제의 향상, 기타 범집행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④ 국가중앙사무국

법무부 내 설치된 기관으로 각국 경찰기관과 범죄정보의 교환, 수사의 협력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경지역 밀수 및 출입국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 등이 있다.

(2) 교통부

① 연방 항공국 및 해안 경비대

연방 항공국은 민간항공에 관하 행정전반을 관장하나, 항공기 납치 등 항공 범죄에 대비한 민간항공경비부 설치 등 공항경찰을 운영하는 경비기관을 두고 있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 해안경비와 치안을 담당하고, 해난구조, 항해안전, 등대업무 등 해상에서의 각종 국제 법규, 조약, 국내법령의 준수를 주된 임무로 수행한다.

② 연방도로국 및 도로 교통 안전국

연방 도로국은 각 주간 주요국도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임무로 하고 있

고, 도로 교통 안전국의 경우, 도로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 사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휘발유의 소비효율성 제고, 차량의 고장과 불필요한 수리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3) 재무부

연방정부의 재정,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로서 재무부의 법집행 영역은 위폐단속, 정부유가증권단속, 탈세단속, 밀수수사와 방지, 대통령 기타 요인의 경호, 알코올, 담배, 무기, 폭발물의 규제와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주류·담배·무기국

재무부내에 독립된 법집행기관으로, 알코올, 음료의 밀조, 탈세의 적발, 불법담배와 단속, 총기의 제조, 수입, 판매에 관한 연방법 위반의 단속과 폭발물 규제와 단속을 주된 임무로 한다. 범죄수사권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약 1,500명, 규제관계 각종 업무를 행하는 검사관이 약 1,000명 근무하고 있다.

② 관세청

관세 없이 밀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세관원이 있으며 관세의 징수, 밀수의 방지 등을 임무로 한다. 이민 귀화국, 마약단속국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

③ 특별 경호국

1865년 창설된 연방 최초의 법집행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서 연방정부의 화폐, 공채, 연방정부발행증권의 위조를 금지 하는 법률 및 국고, 은행 통화 에 관한 법률의 집행, 요인경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부통령과 가족들, 전 대통령, 내방 외국요인 등의 경호담당, 연방화폐 및 채권위조, 신용카드 사기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업무 수행 특별요원이 있다.

(4) 내무부

① 교화국 및 어류야생동물 보호국

교화국은 토지개간, 간척, 관개를 행하는 곳으로 수력발전소의 관리 운용도 한다. 이들 개척지의 치안유지, 범죄의 수사를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어류야생동물 보호국은 미국 내 391개소의 연방조수보호구가 있어서 어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불법포획, 환경파괴 등을 단속하며, 수렵감시관이 조수보호 관계의 법령집행, 위반내용의 수사 및 범인체포, 보호동물의 학술목적을 위한 수렵의 허가, 조수 실태조사, 보호동무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 조사 등을 행한다.

② 토지관리국

국유지를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광물, 목재, 천연자원, 동식물 등 주요 자원의 보호도 함께 한다. 각 주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제복순찰대원, 범죄수사관, 사막순시원 등이 있다.

(5) 특허청

특허, 상표위조 등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상표권 침해 등 조직적인 해적행위 방지를 위하여 핫라인이 STOP을 운영한다. 여기에 제보된 범죄내용을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 연방관세청, 연방관세 및 국경수비대 등에 제공하여, 이들 수사기관이 상표위조 등을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다.

3.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일본의 사법경찰관리제도는 형사소송분야에서 범죄수사기관은 사법경찰직원으로서 “검찰관 및 검찰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사무관”이며 이를 흔히 일반사법경찰직원과 특별사법경찰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 및 사법순사를 통칭하는 용어(형사소송법 제39조 제3항)로 범죄를 수사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형사소송법 제189조 제1항), 통상 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 경찰관은 도부현에 소속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통칭하며(경찰법 제63조), 따라서 경찰관은 신분에 관한 통칭이라고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업무내 더 중점을 둔 통칭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순사란 사법경찰 활동을 행하는 사법경찰직원의 하나로 사법경찰관과 달리 범죄수사나 피의자 체포 등 사법경찰 활동 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한다. 주로 피의자 체포시의 변명 녹취, 증거품 소유자에게 반환, 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관의 직급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서법순사의 직위가 구분된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시 순사 및 경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검찰의 지시권, 지휘권 등

검찰관은 관할구역내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공소유지에 관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이를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이라 한다. 검찰관의 일반적 지시권은 그 검찰관이 소속한 검찰청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법경찰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검사총장 또는 차장검사는 전국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시는 '일반적인 준칙'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검찰관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이를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지휘권이라 한다.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휘는 검찰관이 행하는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직원의 협력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때문에 사법

경찰직원이 직접 행하는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휘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휘는 검찰관이 구체적 사건을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따라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반적 지시의 방법으로 행한다(형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검찰관은 위에서와 달리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시킬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3조 제3항). 이를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이라 한다. 이는 검찰관이 구체적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구체적 지휘권의 대상은 특정의 사법경찰직원이다. 일반사법경찰직원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직원은 물론 그 이외의 사법경찰직원도 그 대상으로 한다. 검찰관의 구체적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직원은 검찰관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직원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지위를 일시 상실한다. 이 때 사법경찰직원이 보조하는 수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의자 취조, 참고인 취조와 같은 임의 수사는 물론,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보조가 허용된다.

(1) 검찰의 징계소추권

사법경찰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관의 지시-지휘를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총장, 검사장 또는 검사정은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2) 특별사법경찰의 법적 근거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 이외에 『사법경찰직원등지정응급조치법』 제1조 및 대정 12년 칙령 제528호(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지정에 관한 건)에 따라서 지정 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0조 규정에도 근거가 있다. 또한 『사법경찰직원등지정응급조치법』에 근

거한 전통적인 14종류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는, 해상보안관(해상본청법 제31조), 마약단속관(리)(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제54조 제5항), 노종기준 감독관(노동기준법 제201조), 자위대경무관(자위대법 제96조 제1항), 황궁호 위관(경찰법 제69조), 우정감찰관(일본우정공사법 제63조 제3항), 선원노무 관(선원법 제108조, 선원재해방지활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어업감독관 (리)(어업법 제74조 제5항), 광산감독관(광산보안법 제49조), 조류 및 동물 보호를 담당하는 도도부현 공무원(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세청 감찰관, 수렵사무담당 지방자치단체 직원, 선장 등이 다.

2) 정부명령에서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지정에 관한 건”인 대정 12년 칙령 제52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는 다음과 같다.

교도소의 법무사무관(형무관) (동령 제2조·제3조 제3호·제11조), 수렵사무 담당하고(제3조 제2호), 도청 및 부현의 수렵담당 지방사무관(제3조 제8호), 산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농림수산사무관(제3조 제4호), 북해도청 직원, 북해도청 산림관리담당 및 도립공원담당 지방사무관(제3조 제6호, 제7호), 원양어업 및 연안업 업무를 담당하는 총톤 수 20톤 이상의 선박, 갑판장, 기관장급 등 해당자(제6조 제1호~2호)

3) 강제조사권을 가진 공무원

법률에 의하여 강제조사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행정절차의 한 필요업무로써 조사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입 국경비관, 세관직원, 국제사찰관, 간접국세 단속담당 국세청 사무관, 지방세 사무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증권거래 특별조사

관 등이다.

강제조사권 소지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죄발생 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39조2항). 이들은 엄격한 의미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달리 사법절차 상에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분야에서 범죄발생 개연성을 고려한 강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행정관청 공무원이다. 그리고 검사, 감독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간접적인 강제(의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 특별한 직종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 국세직원, 지방세 사무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험료 징수담당 사회보험청 사무관, 보험료 징수담당 자치단체 직원, 알코올 사업담당 경제산업성 사무관, 비행기 기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 감별소 간호교관, 아동자립지원시설 직원, 소년원 법무교관, 아동상담소 직원 등이다. 이외에도 재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범죄를 적발하거나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원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공직자도 있다. 원인조사 담당 소방관, 해난심판청 심사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사고 조사관 등이다.

4) 분야별 특별사법경찰관리

(1) 마약단속관(리)

마약단속관(리)는 후생노동성 직원으로 지방후생국에 설치된 마약단속부에 배치되어 마약단속, 약물의 부정사용 행위단속, 약물범죄 수사, 정규마약의 부정사용, 부정유출, 도난 등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시행한다.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제54조 제5항에 근거한 특별사법경찰직원으로서, 소형무기 등의 휴대가 인정되고 있으며, 경찰관과 동일한 체포술 등 훈련을 받는다. 합정수사(동법제58조)를 할 수 있으며, 마약특례법에 따른 마약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마약단속관은 각 도도부현의 마약단속원, 경찰, 해상보안

청, 세관, 임국관리국 등과 협력수사를 하며 현재 정원은 207명이다. 마약단속관은 직무상 대상의 약학부 출신자(약제사 면허 보유자)가 많으나 다른 자격요건에 의하여 채용되기도 한다. 이때 마약 및 향정시약 단속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마약단속관의 자격으로써는, 2년 이상 마약 단속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년이상 약사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사람, 약학대학교 및 약사관련 법률 전공학사 등으로 1년 이상 마약단속 사무에 종사한 경험자 등이다.

(2) 우정감찰관

우정감찰관은 우정사업과 관련한 범죄단속을 수행하는 일본 우정공사 직원으로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직원이다. 우정성 설치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우정감찰관은 우정업무 관련 모든 범죄의 혐의가 발생할 때 수사하고 그 내용을 우정성 상관에 보고한다. 현행범체포의 경우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으며, 피의자 체포 필요시 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직원 및 사법순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우정감찰관은 우정사업민영화법 통과 시 특별사법경찰에서 제외되었으며, 과거 660여명으로 우정직원들이 절도,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정보수집, 수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3) 노동기준감독관(노동기준법 제102조)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은 2003년 7월 말 현재 3,658명으로 후생노동성 본부에 35명, 도도부현 노동국에 811명, 노동기준감독성에 2,812명이 배치되어 있다. 후생노동성 본부에는 노동기준감독관의 신분권을 갖는 공무원 등에는 별도의 채용시험을 거친 노동기준감독관으로 채용된 감독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국가공무원 채용 제1종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책적으로 임명된 노동기준 감독관이라고 해서 정령감독관이라고 한다.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지방노동국장, 도도부현 노동기준감독국장 및 노동기준감독서장

은 노동기준감독관의 신분을 지녀야 한다(노동기준법 제99조 제2항).

4. 이탈리아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이탈리아는 양원제의 내각제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제도도 분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 경찰조직은 교도경찰(Penitenziaria Police)과 국가산림경찰 등 특별경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경찰은 내무부 소속의 국가경찰, 국방부 소속의 군인경찰, 재무부 소속의 재무경찰로 구성되며 중앙에 내무부소속의 경찰총국, 지방조직으로 각도에 도지사 소속하에 경찰본부 및 산하조직인 경찰서가 있다. 자치경찰은 기초자치경찰법에서 '모든 자치단체는 관할지역마다 자체경찰력을 보유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 특히 시 단위에서는 자체경찰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헌법 제114조에서 자치정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 자치정부(Comuni), 도정부(province), 광역시정부, 지역정부(regioni)와 중앙정부로 구성된다. 기초자치정부, 도정부, 광역시정부, 지역정부는 헌법에 규정한 원칙에 따라서 자치법 제정, 권한, 기능을 부여받은 자율법인체로서 20개의 주(Regioni), 103개의 도(Province), 8,101개의 기초자치정부(Comuni)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주 자치경찰(Polizia Regione), 도 자치경찰(Polizia Provinciale), 시 자치경찰(Polizia Municipale)로 구분된다.

1) 이탈리아 자치경찰조직의 근거

이탈리아 헌법 제117조는 국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규정하면서, "(h)지방의 행정경찰권을 제외하고, 국가권한으로 법률, 공공질서, 공공안전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경찰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치경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정부차원에서 지역 내 자치경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정부의 지방(자치)경찰기준법을 제

정, 운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법령을 통해서 지역정부 내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각 기초자치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상호간의 협력관계, 공조활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86년 3월 7일 법률 제65호 기초자치경찰법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규정 : “기초자치정부는 지방(자치)경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자치경찰을 조직할 수 있다”(동법 제1조). 이 법에 의해서 자치경찰을 전문직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인정하였고, 다시 이 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각 자치정부는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2)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다양한 종류

지역에 따라서는 자치경찰이 다양한 경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에 따라 구분한 자치경찰이 행정경찰 기능과 사법경찰 기능을 한다. 도시자치경찰은 도심지 내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안전보호 등을 주 임무 수행하고 있으며, 상업위생 자치경찰은 상행위에 관한 질서유지, 위생상태 검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도시건설 자치경찰은 자치정부 내 도심지의 건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건축물에 대한 주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농촌경찰은 농수산 및 산림보호 등 자치정부의 농지자원과 관련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환경감시 자치경찰은 자연환경, 동식물 보호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관광자치경찰은 관광지과 탐핑지역, 해변 가 등에서의 주민 안전 보호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재무경찰

이탈리아의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제도는 세계유일의 재무관련 국가경찰조직으로서 EU OLAF(Office de Lutte Anti-Fraude :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 유럽부패방지국)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WCO

RICO,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조직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융, 은행, 보험, 증권등 경제전반 모든 영역의 권한에 관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허, 지재권, 상표권, 원산지, 위조, 변조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하며, 금융거래추적, 은행 감찰권, 지출경비 전반에 대한 수사, 유럽공동지출자금 수사(90~95%를 재무경찰이 적발)를 담당하고 있음은 이탈리아 재무경찰의 특징이라 할 것 이다. 나아가 이러한 재무경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재무경찰은 1774년 관세 · 밀수 · 국경수비 목적의 "Legione Truppe Leggere"에서 기원, 1881년 비로소 재무경찰이란 이름을 갖게 되어 재무 · 경제 · 조세분야로 역할이 확대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탈리아 재무경찰은 재무부 산하의 준조직 체계로, 특수경찰부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군군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경제범죄를 주로 수사하며, 위폐사범, 공정거래법위반자, 마약사범, 출입국, 밀수입 방지 및 검문검색 등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해상 및 항공을 방위하고 기업 및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특수대 조직이 있으며, 모든 영역의 경제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제 3 절 대한민국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 방안

1. 주요 국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사점

위에서 주요 국가의 경찰제도 및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개관을 살펴 보았다. 이는 각 국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경찰권의 인정 범위와 다양한 현대행정에 있어 특정한 영역 상 일반경찰이 수행하기에 어려운 범죄행위의 전문성과 공간적 접근성이 쉬운 제한된 행정 영역에 있어 인정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개관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경찰제도는 독일 등을 비롯한 유럽사회의 경찰개념과 매우 흡사하며, 이러한 개

념적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발전적 모습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기능 및 책임의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항목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경찰제가 근간인 두 나라에서 자치경찰과의 사무 분배를 함에 있어서 자치경찰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여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면적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 관련 법제를 체계화 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사무 분배 기준을 명확히 성립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찰력을 근간으로 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 경찰이 모든 경찰사무를 담당하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경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유럽의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수국가들은 자치경찰의 기능이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음주운전단속, 중죄·경죄·경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국가경찰에 보고 의무, 범죄수사 보조 의무 등 사법경찰리 또는 사법경찰리 보조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 기반하여 새로운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확대와 관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법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관세청 특별 사법경찰제도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 관세행정 업무에 있어 무엇보다 요구 시 되고 있는 사항은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수출입 관련 가격조작에 관한 신종범죄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의 역할이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현재 국제 무역환경변화를 고려할 시 무역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에 근거하여 유럽,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는 우리 경제가 다시 재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장 활로로써 새로이 인식되

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와 같은 국제 무역환경변화의 급격한 흐름과 이에 신속히 상응하지 못하는 법제적 흠결을 악용한 국제국경 법질서 위반행위와 국가성장력을 저해하는 불법, 부정무역 위반 행위는 형법상 사기, 횡령 등의 범죄와 결합되어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그 양태를 다양화 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관세법 위반범죄의 경합하는 형법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 재무경찰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경관리 재무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할 것이다.

1) 관세청 관할범죄와 경합관계에 있는 형법범에 대한 수사권 부여

현재 우리나라 관세행정 업무에 있어 무엇보다 요구 시 되고 있는 사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무역가격조작에 관한 신중범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현재 국제 무역환경변화를 고려할 시 무역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에 근거, EU·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발효는 우리 경제가 다시 재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장 활로로써 새로이 인식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 무역환경변화의 급격한 흐름과 이에 신속히 상응하지 못하는 법제적 흠결을 악용한 유해식품, 마약, 총기류, 원산지세탁, 자금세탁, 위조 상품, 외화도피 등 관세국경 법질서 위반행위와 국가성장력을 저해하는 불법·부정무역 위반행위는 형법상 사기, 횡령 등의 범죄와 결합되어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그 양태를 다양화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관세법 위반범죄와 경합하는 형법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려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대상에 있어서도 현행 특별사법경찰의 범죄 검거 건수를 보면 특별법 위반사범 뿐 아니라 일반 형법범의 수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2010년 특별사법경찰 관할사건 발생건수 118,257건 중 형법범 1,356건, 그 중 재산범 350건이다. 특별사법경찰 전체 검거건수 94,872건 중 형법범은 1,189건, 검거율을 87.7%로 특별사법경찰 전체 검거율은 매우 높은 편이나 재산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72.3%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실제 검사의 수사지휘에서도 특별법 위반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범에 대한 수사를 특별사법경찰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관세행정상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 마. 목의 내용을 사기, 횡령, 배임의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범 전반으로 확대하여 입법적으로 실무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있으나, 이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다소 무리한 입법적 고려라 생각되어지며, 때문에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실무적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2) 이탈리아 재무경찰제도 벤치마킹

이탈리아의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제도는 세계유일의 재무관련 국가경찰조직으로서 금융, 은행, 보험, 증권등 경제전반 모든 영역의 권한에 관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세, 관세, 증권, 은행, 특허, 지적권, 상표권, 원산지, 위조, 변조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하며, 금융거래추적, 은행 감찰권, 지출경비 전반에 대한 수사, 유럽공동지출자금 수사를 재무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분야별 특화된 전문팀이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EU) 경제를 수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이와 유사하게 재무경찰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범죄자금, 재산도피 등 분야별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국가 경제를 수호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경관리 재무경찰 조직으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

3) 조사기법의 개발

수출입 가격조작행위에 대한 조사는 새롭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조사기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도 '09년 이후 수출입 관련 사기행위, 예산편취 등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상당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존재를 추정할 것일 뿐, 그 실체를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향후에는 부당이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수집 및 피의자 조사 등 새로운 조사기법의 습득이 요구된다. 관세청은 향후 조사요원 교육과정에 가격조작 조사를 적극 포함시키고, 선도적인 조사요원들의 가격조작죄 조사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하여 새로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전국 세관 조사팀에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금세탁 및 무역가격조작의 정의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자금세탁 사례분석을 실제 관세청에서 발생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사하는 점과 대한민국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와 법령에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현재 무역가격조작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다수 유형의 지능적 경제범죄가 파생되고 있다. 첫째, 재산국외도치 및 역외탈세에 이용될 수 있다. 둘째, 공공재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국가예산으로 조달하는 방위산업물품 등은 수입물품인 경우 수입신고가격이 정부 구매 단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셋째, 주가조작 또는 신용장 사기에 이용되기도 한다.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의 수출입 가격을 고가조작 혹은 저가조작하여 반복적인 수출입행위를 통해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것이다. 넷째, 비자금 조성에도 이용된다.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고 수입대금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착복하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무역가격조작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는 이미 관세청의 기획조사를 통해 상당한 금액이 적발되고 있다.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행위는 이렇게 다양한 무역사기범죄를 파생할 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가격조작을 통한 지능적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와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관세청에서 무역과 관련된 사기 및 횡령을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과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제6조14호 마. 목의 내용을 사기, 횡령, 배임의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범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에 근거, EU·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발효 등으로 무관세를 악용한 무역가격조작행위 및 세계글로벌화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증가로 신종 경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사전에 대응하여 국가경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경찰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관세청도 범죄자금, 재산도피 등 분야별 핵심 정보분석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경제를 수호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경관리 재무경찰 조직으로 조직을 재설계가 필요하다.

관세청에서는 향후 수출입가격 조작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무역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등 지능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사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부당이득 목적의 무역가격조작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사용한 조달 내역,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내역, 수출보험 대지급 내역 등 유관기관의 재원 지급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본 논문의 전체적인 목적과 목표는, 최근에 등장하는 무역가격조작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물론 나아가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관련 무역거래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및 무역조작에 관한 실례는 무역과 금융이 결합되어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가시화된 통계자료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례에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 적이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재산도피, 부당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가수입신고내지 저가수출신고와 같은 무역가격조작은 현행 관세법상 단순한 허위신고로 처벌할 수 밖에는 없는 입법적 한계를 보여준다. 아울러 그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저해에 비하여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며, 나아가 군납물품 고가수입을 통한 방위사업자금 편취 등의 군납비리, 의약품 원료물질 고가수입을 통한 리베이트·비자금 조성, 신용장의 추상성을 악용한 은행자금편취와 같은 신용장 사기 등을 통한 가격 조작 등 수출입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현행 관세법 등에서 그 한계가 있는 범구성체계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검찰청, 「외사사범 수사 실무」, 2002
- 관세청, 「자금세탁의 이해와 조사방법」, 2001
- 관세청, 「무역기반 자금세탁 단속을 위한 가이드」, 2007
- 김건식, 「금융거래법 강의」, 법문사, 1999
- 김철수,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두현,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길주, 「관세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조사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해설」, 2002,
- 성낙인, 권건보, 「자금세탁방지법제론」, 경인문화사, 2008
- 성낙인, “부패방지법의 현황과 과제”, 「공법연구 제24집 제3호」, 1996
- 안형도,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3-12, 2003
- 안형도, 「주요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고찰과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00-04, 2000
- 최권수, 「간추린 무역 실무」, 동남사, 2010
- 한국관세포럼, 「성실납세 기반 구축을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향」, 2013